

**『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·운영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』**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4월 22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치매환자의 실종예방과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 및 수색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하는 지원방안을 수립·시행하여,
- 치매환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등 치매 가정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6조 치매관리사업 중에 수색에 필요한 장비, 무인항공기, 시스템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제5호,6호 신설)
- 나. 조항 신설에 따라 변경 조치사항 등 반영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일(목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2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teasugar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 : ○ 성 명 : 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- 나.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·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필요한 장비, 무인항공기, 시스템 등의 지원방안
6.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방자치단체, 경찰 및 관련기관
·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치매관리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 업을 수행할 수 있다.	제6조(치매관리사업)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5.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필요한 장비, 무인항공기, 시스템 등 의 지원방안</u>
<u><신 설></u>	<u>6.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방자치단체, 경찰 및 관련기관·단체 등 과의 협력 체계 구축방안</u>
<u>5. (생 략)</u>	<u>7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u>

[붙임 1] 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「치매관리법」 제6조 (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치매관리법

제6조(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5. 1. 28.>

1. 치매의 예방·관리를 위한 기본시책
2.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
3. 치매환자의 치료·보호 및 관리
4. 치매에 관한 홍보·교육
5. 치매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개발
6.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
7.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
8.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

기관·단체·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수색에 필요한 장비, 무인항공기,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

2. 미첨부 사유

- 실종치매환자 수색 및 발견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 수립 전으로 사업 규모 및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추진 예정

4. 작성자

-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장 이은영